

#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2025. 10.

가톨릭관동대학교

※ 본 시행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전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 례

I. 전형별 모집인원 .....	1
II. 수시모집 .....	3
III. 정시모집 .....	7
IV. 재외국민과 외국인 .....	10
V.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	11
VI. 수능성적 반영방법 .....	13
VII.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 .....	16

# I. 전형별 모집인원

정원내			수시모집													정시모집(나/다군)								합계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소계	군구별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소계	
			입학	지연재	지역균형	기회형	우수추천(A)	입학	지연재	가톨릭추천	성취자	재진자	인근인	실기	체류자			입학	지연재	실기	우수추천(B)	선진	입학		성취자		재진자
의과대학	의학	의학과(의예과)	20	25	3	1		5	7	5						66	다	24	10						34	100	
		간호학과	36	25	3	3		10	5	5						87	다	20	이월						20	107	
헬스케어융합대학	자연과학	임상병리학과	15	10		2		4	2						33	다	7								7	40	
		치위생학과	20	10		2		4							36	다	4								4	40	
사범대학	인문사회	국어교육과	18	4		1		3	2						28	다	이월								-	28	
		지리교육과	15	7		1		3	2	2					30	다	이월								-	30	
		영어교육과	26	5											31	나	이월								-	31	
		역사교육과	14	7		1		3	2	2					29	다	이월								-	29	
	자연과학	수학교육과	26	5											31	나	이월								-	31	
		컴퓨터교육과	20	4		1		3	2						30	다	이월								-	30	
예체능	체육교육과								2			20		22	다			18						18	40		
트리니티융합대학	광역	자율전공학부	156	50		15						20	20		261	다	이월								-	261	
		경영학전공	31	10											41	나	이월								-	41	
	인문사회	행정학전공	24	7											31	다	이월								-	31	
		경찰학부	93	30		5		5							133	다	이월								-	133	
		사회복지학전공	26	10		5		5							46	나	이월								-	46	
		광고홍보학전공	26	5											31	나	이월								-	31	
		호텔관광경영학전공	26	5											31	나	이월								-	31	
		조리외식경영학전공	31	10											41	나	이월								-	41	
		의료경영학전공	21	10											31	다	이월								-	31	
		항공교통물류전공	26	5											31	나	이월								-	31	
	자연학	콘텐츠제작전공	26	5											31	다	이월								-	31	
		의생명과학전공	26	5											31	다	이월								-	31	
		건축공학전공	16	5											21	나	이월								-	21	
		건축학전공(5년제)	26	5											31	다	이월								-	31	
	공학	디지털헬스케어전공	16	5											21	나	이월								-	21	
		항공운항전공	26	5											31	다	이월								-	31	
		항공정비학전공	31	5					5						41	나	이월								-	41	
		스포츠레저학전공											40		40	나			10						10	50	
예체능	스포츠재활의학전공					10						41		51	나			10						10	61		
	스포츠지도학전공											36		36	다	이월		5						5	41		
	실용음악전공	16	5											21	다	이월								-	21		
	CG디자인전공	26	5											31	다	이월								-	31		
휴먼서비스대학	인문사회	언어재활학과												20	나										-	20	
		치매전문재활학과													20	나									-	20	
		산림치유학과													30	나									-	30	
		복지상담학과													20	나									-	20	
		스마트통합치유학과													20	나									-	20	
		해양치유레저학과													20	나									-	20	
합계			879	289	6	37	10	45	27	16	130	20	20	101	36	1,616	-	55	10	38	5	-	-	-	-	108	1,724

정원외			수시모집						정시모집(나/다군)									
대학	계열	모집단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소계	군 구분	수능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농어촌학생	기초생활 및 차상위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선취업 후 진학자	만 학도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및 차상위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및 차상위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선취업후 진학자	만 학도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및 차상위
의과대학	의학	의학과(의예과)	5	5					10	다	이월	이월						
	자연과학	간호학과	10	5					15	다	이월	이월						
헬스케어융합대학		임상병리학과	4이내	8이내					12이내	다	이월	이월						
		치위생학과	4이내	8이내					12이내	다	이월	이월						
사범대학		인문사회	국어교육과	2이내	1이내				3이내	다	이월	이월						
	지리교육과		2이내	1이내				3이내	다	이월	이월							
	영어교육과		2이내	1이내				3이내	나	이월	이월							
	역사교육과		2이내	1이내				3이내	다	이월	이월							
	자연과학	수학교육과	2이내	1이내				3이내	나	이월	이월							
		컴퓨터교육과	2이내	1이내				3이내	다	이월	이월							
예체능	체육교육과						2	2	4	다					이월	이월		
트리니티융합대학	광역	자율전공학부	25이내	25이내					50이내	다	이월	이월						
		경영학전공	4이내	4이내					8이내	나	이월	이월						
	인문사회	행정학전공	3이내	3이내					6이내	다	이월	이월						
		경찰학부	13이내	13이내					26이내	다	이월	이월						
		사회복지학전공	4이내	4이내					8이내	나	이월	이월						
		광고홍보학전공	3이내	3이내					6이내	나	이월	이월						
		호텔관광경영학전공	3이내	3이내					6이내	나	이월	이월						
		조리외식경영학전공	4이내	4이내					8이내	나	이월	이월						
		의료경영학전공	3이내	3이내					6이내	다	이월	이월						
		항공교통물류전공	3이내	3이내					6이내	나	이월	이월						
	자연과학	콘텐츠제작전공	3이내	3이내					6이내	다	이월	이월						
		의생명과학전공	3이내	3이내					6이내	다	이월	이월						
		건축공학전공	2이내	2이내					4이내	나	이월	이월						
		건축학전공(5년제)	3이내	3이내					6이내	다	이월	이월						
	공학	디지털헬스케어전공	2이내	2이내					4이내	나	이월	이월						
		항공운항전공	3이내	3이내					6이내	다	이월	이월						
		항공정비학전공	4이내	4이내					8이내	나	이월	이월						
		스마트항만공학전공			30				30	나			이월					
	예체능	스포츠레저학전공																
		스포츠재활의학전공																
스포츠지도학전공																		
실용음악전공		2이내	2이내					4이내	다	이월	이월							
	CG디자인전공	3이내	3이내					6이내	다	이월	이월							
	언어재활학과						5	5	나							이월		
휴먼서비스대학	인문사회	치매전문재활학과					5	5	나								이월	
		산림치유학과				5	5	나					이월					
		복지상담학과					5	5	나								이월	
		스마트통합치유학과				2	3	5	나					이월			이월	
		해양치유레저학과					5	5	나								이월	
		소계			15+통합40	10+통합27												
합계			55	37	30	7	23	2	2	156	-	-	-	-	-	-	-	

## Ⅱ. 수시모집

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전형방법												
(정원내) 학생부 교과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전형요소</th> <th style="width: 45%;">교과</th> <th style="width: 40%;">출결</th> </tr> </thead> <tbody> <tr> <td>반영비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93.1%</td> <td style="text-align: center;">6.9%</td> </tr> <tr> <td>전형총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900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점</td> </tr> <tr> <td>수능최저</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만 반영 14쪽 참조</td> </tr> </tbody> </table> <p>※ 교과 반영방법 11쪽 참조</p>	전형요소	교과	출결	반영비율	93.1%	6.9%	전형총점	900점	100점	수능최저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만 반영 14쪽 참조	
	전형요소	교과		출결											
	반영비율	93.1%		6.9%											
	전형총점	900점		100점											
수능최저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만 반영 14쪽 참조														
지역인재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사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 단,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 지원자 중,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졸업(예정)하고 재학 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한 자                     </div>														
지역기회균형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아래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margin-top: 5px;">                         ※ 단,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 지원자 중,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졸업(예정)하고 재학 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한 자                     </div>														
기회균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서해 5도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x-small;">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6f2ff;"> <th style="width: 10%;">호수</th> <th style="width: 90%;">대상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호</td> <td>장애인 등 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호</td> <td>국가보훈대상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호</td> <td>서해 5도 학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호</td> <td>자립지원 대상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호</td> <td>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호</td> <td>만학도</td> </tr> </tbody> </table>	호수	대상자	1호	장애인 등 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호	국가보훈대상자	3호	서해 5도 학생	4호	자립지원 대상자	5호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6호	만학도
호수	대상자														
1호	장애인 등 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2호	국가보훈대상자														
3호	서해 5도 학생														
4호	자립지원 대상자														
5호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6호	만학도														

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전형방법												
	운동선수출신(A)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부(19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 또는 중학교 졸업 이후의 프로선수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정회원, 준회원 인정), 종목별 프로협회(연맹), 교육부가 주최하는 전국규모의 전문스포츠대회 및 동호인생활체육대회(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li> <li>고등부(19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로 시도 체육회, 시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정회원, 준회원 인정), 시도 교육청이 주최하는 시도 규모의 전문스포츠대회 및 동호인생활체육대회(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li> <li>고등부(19세 이하부), 대학부 선수로 대한체육회 정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 정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권역별(주말) 리그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table border="1"> <tr> <td>전형요소</td> <td>교과</td> <td>출결</td> </tr> <tr> <td>반영비율</td> <td>93.1%</td> <td>6.9%</td> </tr> <tr> <td>전형총점</td> <td>900점</td> <td>100점</td> </tr> <tr> <td>수능최저</td> <td colspan="2">없음</td> </tr> </table> <p>※ 교과 반영방법 11쪽 참조</p>	전형요소	교과	출결	반영비율	93.1%	6.9%	전형총점	900점	100점	수능최저	없음	
전형요소	교과	출결													
반영비율	93.1%	6.9%													
전형총점	900점	100점													
수능최저	없음														
(정원내) 학생부 종합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table border="1"> <tr> <td>전형요소</td> <td>서류</td> </tr> <tr> <td>반영비율</td> <td>100%</td> </tr> <tr> <td>전형총점</td> <td>1,000점</td> </tr> <tr> <td>수능최저</td> <td>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만 반영, 14쪽 참조</td> </tr> </table>	전형요소	서류	반영비율	100%	전형총점	1,000점	수능최저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만 반영, 14쪽 참조				
	전형요소	서류													
	반영비율	100%													
	전형총점	1,000점													
	수능최저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만 반영, 14쪽 참조													
	지역인재	<p>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사람</p> <p>※ 단,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 지원자 중,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졸업(예정)하고 재학 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한 자</p>													
가톨릭지도자 추천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톨릭 사제 또는 현직 수도회 장상(총원장, 관구장, 수도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li> <li>가톨릭계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지원자 종교 무관)</li> <li>가톨릭교회법이 인정하는 성직자 또는 수도자로서 소속 장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li> </ul>														
성인학습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7. 3. 1. 기준 만25세 이상인 사람														
재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전형방법																																	
(정원내) 실기 /실적	실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table border="1"> <thead> <tr> <th>모집단위</th> <th colspan="2">체육교육과</th> <th colspan="2">스포츠레저학전공 스포츠재활의학전공</th> </tr> <tr> <th>전형요소</th> <th>실기</th> <th>교과</th> <th>실기</th> <th>교과</th> </tr> </thead> <tbody> <tr> <td>반영비율</td> <td>52.38%</td> <td>47.62%</td> <td>52.00%</td> <td>48.00%</td> </tr> <tr> <td>전형총점</td> <td>300점</td> <td>700점</td> <td>400점</td> <td>600점</td> </tr> <tr> <td>수능최저</td> <td colspan="4">없음</td> </tr> </tbody> </table> <p>※ 교과 반영방법 11쪽 참조</p> <table border="1"> <thead> <tr> <th>모집단위</th> <th>실기고사종목</th> </tr> </thead> <tbody> <tr> <td>체육교육과</td> <td>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배구(월패스)</td> </tr> <tr> <td>스포츠레저학전공</td> <td>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좌전굴</td> </tr> <tr> <td>스포츠재활의학전공</td> <td>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매디신볼던지기</td> </tr> </tbody> </table>	모집단위	체육교육과		스포츠레저학전공 스포츠재활의학전공		전형요소	실기	교과	실기	교과	반영비율	52.38%	47.62%	52.00%	48.00%	전형총점	300점	700점	400점	600점	수능최저	없음				모집단위	실기고사종목	체육교육과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배구(월패스)	스포츠레저학전공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좌전굴	스포츠재활의학전공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매디신볼던지기
모집단위	체육교육과		스포츠레저학전공 스포츠재활의학전공																																	
전형요소	실기	교과	실기	교과																																
반영비율	52.38%	47.62%	52.00%	48.00%																																
전형총점	300점	700점	400점	600점																																
수능최저	없음																																			
모집단위	실기고사종목																																			
체육교육과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배구(월패스)																																			
스포츠레저학전공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좌전굴																																			
스포츠재활의학전공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매디신볼던지기																																			
(정원내) 실기 /실적	체육특기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체육특기와 관련된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경기(대회)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	<table border="1"> <thead> <tr> <th>전형요소</th> <th>실적</th> <th>교과</th> <th>출결</th> </tr> </thead> <tbody> <tr> <td>반영비율</td> <td>93.24%</td> <td>6.29%</td> <td>0.47%</td> </tr> <tr> <td>전형총점</td> <td>800점</td> <td>180점</td> <td>20점</td> </tr> <tr> <td>수능최저</td> <td colspan="3">없음</td> </tr> </tbody> </table> <p>※ 교과 반영방법 11쪽 참조</p>	전형요소	실적	교과	출결	반영비율	93.24%	6.29%	0.47%	전형총점	800점	180점	20점	수능최저	없음																			
전형요소	실적	교과	출결																																	
반영비율	93.24%	6.29%	0.47%																																	
전형총점	800점	180점	20점																																	
수능최저	없음																																			
(정원외) 학생부 교과	농어촌학생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아래 I·II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tr> <td>유형 I</td> <td>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td> </tr> <tr> <td>유형 II</td> <td>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td> </tr> </table> <p>*「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p> <p>※ 특수목적고,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p> <p>※ 유형 I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부모 거주 총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유형 II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총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임</p>	유형 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	유형 I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	<table border="1"> <thead> <tr> <th>전형요소</th> <th>교과</th> <th>출결</th> </tr> </thead> <tbody> <tr> <td>반영비율</td> <td>93.1%</td> <td>6.9%</td> </tr> <tr> <td>전형총점</td> <td>900점</td> <td>100점</td> </tr> <tr> <td>수능최저</td> <td colspan="2">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만 반영 14쪽 참조</td> </tr> </tbody> </table> <p>※ 교과 반영방법 11쪽</p>	전형요소	교과	출결	반영비율	93.1%	6.9%	전형총점	900점	100점	수능최저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만 반영 14쪽 참조																		
유형 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																																			
유형 I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																																			
전형요소	교과	출결																																		
반영비율	93.1%	6.9%																																		
전형총점	900점	100점																																		
수능최저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만 반영 14쪽 참조																																			
	기초생활 및 차상위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li>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li> <li>「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li> </ul>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li>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li> <li>「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li>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li> <li>「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li> </ul>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전형방법																	
(정원외) 학생부 종합	선취업 후진학자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재직 중인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li> <li>「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li> <li>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li> <li>「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li> </ul>	<table border="1"> <tr> <td>전형요소</td> <td>서류</td> </tr> <tr> <td>반영비율</td> <td>100%</td> </tr> <tr> <td>전형총점</td> <td>1,000점</td> </tr> <tr> <td>수능최저</td> <td>없음</td> </tr> </table>	전형요소	서류	반영비율	100%	전형총점	1,000점	수능최저	없음									
전형요소	서류																			
반영비율	100%																			
전형총점	1,000점																			
수능최저	없음																			
(정원외) 학생부 종합	만학도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7. 3. 1. 기준 만30세 이상인 사람</p>																		
(정원외) 실기 /실적	<p>농어촌학생</p> <hr/> <p>기초생활 및 차상위</p>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아래 I·II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tr> <td>유형 I</td> <td>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td> </tr> <tr> <td>유형 II</td> <td>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td> </tr> </table> <p>*「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 특수목적고,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유형 I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부모 거주 총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유형 II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총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임</p>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li>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li> <li>「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li> </ul>	유형 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	유형 I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	<table border="1"> <tr> <td>전형요소</td> <td>실기</td> <td>교과</td> </tr> <tr> <td>반영비율</td> <td>52.38%</td> <td>47.62%</td> </tr> <tr> <td>전형총점</td> <td>300점</td> <td>700점</td> </tr> </table> <p>※ 교과 반영방법 11쪽 참조</p> <table border="1"> <tr> <td>모집단위</td> <td>실기고사종목</td> </tr> <tr> <td>체육교육과</td> <td>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배구(월패스)</td> </tr> </table>	전형요소	실기	교과	반영비율	52.38%	47.62%	전형총점	300점	700점	모집단위	실기고사종목	체육교육과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배구(월패스)
유형 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																			
유형 I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																			
전형요소	실기	교과																		
반영비율	52.38%	47.62%																		
전형총점	300점	700점																		
모집단위	실기고사종목																			
체육교육과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배구(월패스)																			

### Ⅲ. 정시모집

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전형방법																																									
(정원내) 수능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table border="1"> <tr> <th colspan="4">의학과(의예과)</th> </tr> <tr> <td>전형요소</td> <td>수능</td> <td>한국사 가산점</td> <td>합/불 면접</td> </tr> <tr> <td>반영비율</td> <td>100%</td> <td>-</td> <td>-</td> </tr> <tr> <td>전형총점</td> <td>1,000점</td> <td>8 ~ 10점</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h colspan="3">그 외 모집단위</th> </tr> <tr> <td>전형요소</td> <td>수능</td> <td>한국사 가산점</td> </tr> <tr> <td>반영비율</td> <td>100%</td> <td>-</td> </tr> <tr> <td>전형총점</td> <td>1,000점</td> <td>8 ~ 10점</td> </tr> </table> <p>※ 수능 반영방법 13쪽 참조</p>	의학과(의예과)				전형요소	수능	한국사 가산점	합/불 면접	반영비율	100%	-	-	전형총점	1,000점	8 ~ 10점	-	그 외 모집단위			전형요소	수능	한국사 가산점	반영비율	100%	-	전형총점	1,000점	8 ~ 10점													
	의학과(의예과)																																											
	전형요소	수능		한국사 가산점	합/불 면접																																							
반영비율	100%	-	-																																									
전형총점	1,000점	8 ~ 10점	-																																									
그 외 모집단위																																												
전형요소	수능	한국사 가산점																																										
반영비율	100%	-																																										
전형총점	1,000점	8 ~ 10점																																										
지역인재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사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 단,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 지원자 중,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 졸업(예정)하고 재학 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한 자                 </div>																																											
실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table border="1"> <tr> <th rowspan="2">모집단위</th> <th colspan="3">체육교육과</th> <th colspan="3">스포츠레저학전공 스포츠재활의학전공</th> </tr> <tr> <td>수능</td> <td>실기</td> <td>한국사 가산점</td> <td>수능</td> <td>실기</td> <td>한국사 가산점</td> </tr> <tr> <td>전형요소</td> <td>수능</td> <td>실기</td> <td>한국사 가산점</td> <td>수능</td> <td>실기</td> <td>한국사 가산점</td> </tr> <tr> <td>반영비율</td> <td>75.19%</td> <td>24.81%</td> <td>-</td> <td>75.47%</td> <td>24.53%</td> <td>-</td> </tr> <tr> <td>전형총점</td> <td>700점</td> <td>300점</td> <td>8~10점</td> <td>600점</td> <td>400점</td> <td>8~10점</td> </tr> </table> <p>※ 수능 반영방법 13쪽 참조</p> <table border="1"> <tr> <th>모집단위</th> <th>실기고사종목</th> </tr> <tr> <td>체육교육과</td> <td>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배구(월패스)</td> </tr> <tr> <td>스포츠레저학전공</td> <td>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좌전굴</td> </tr> <tr> <td>스포츠재활의학전공</td> <td>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메디신볼던지기</td> </tr> </table>	모집단위	체육교육과			스포츠레저학전공 스포츠재활의학전공			수능	실기	한국사 가산점	수능	실기	한국사 가산점	전형요소	수능	실기	한국사 가산점	수능	실기	한국사 가산점	반영비율	75.19%	24.81%	-	75.47%	24.53%	-	전형총점	700점	300점	8~10점	600점	400점	8~10점	모집단위	실기고사종목	체육교육과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배구(월패스)	스포츠레저학전공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좌전굴	스포츠재활의학전공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메디신볼던지기
모집단위	체육교육과			스포츠레저학전공 스포츠재활의학전공																																								
	수능	실기	한국사 가산점	수능	실기	한국사 가산점																																						
전형요소	수능	실기	한국사 가산점	수능	실기	한국사 가산점																																						
반영비율	75.19%	24.81%	-	75.47%	24.53%	-																																						
전형총점	700점	300점	8~10점	600점	400점	8~10점																																						
모집단위	실기고사종목																																											
체육교육과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배구(월패스)																																											
스포츠레저학전공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좌전굴																																											
스포츠재활의학전공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메디신볼던지기																																											
(정원내) 학생부 교과	운동선수출신(B)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font-size: 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등부(19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 또는 중학교 졸업 이후의 프로선수로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정회원, 준회원 인정), 종목별 프로협회(연맹), 교육부가 주최하는 전국규모의 전문스포츠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li> <li>고등부(19세 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로 시도 체육회, 시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정회원, 준회원 인정), 시도 교육청이 주최하는 시도 규모의 전문스포츠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li> <li>고등부(19세 이하부), 대학부 선수로 대한체육회 정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권역별(주말) 리그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div>	<table border="1"> <tr> <td>전형요소</td> <td>교과</td> <td>출결</td> </tr> <tr> <td>반영비율</td> <td>93.1%</td> <td>6.9%</td> </tr> <tr> <td>전형총점</td> <td>900점</td> <td>100점</td> </tr> </table> <p>※ 교과 반영방법 11쪽 참조</p>	전형요소	교과	출결	반영비율	93.1%	6.9%	전형총점	900점	100점																																
전형요소	교과	출결																																										
반영비율	93.1%	6.9%																																										
전형총점	900점	100점																																										

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전형방법																																
(정원내) 학생부 종합	일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table border="1"> <tr> <td>전형요소</td> <td colspan="3">서류</td> </tr> <tr> <td>반영비율</td> <td colspan="3">100%</td> </tr> <tr> <td>전형총점</td> <td colspan="3">1,000점</td> </tr> <tr> <td>수능최저</td> <td colspan="3">없음</td> </tr> </table>	전형요소	서류			반영비율	100%			전형총점	1,000점			수능최저	없음																		
	전형요소	서류																																	
	반영비율	100%																																	
	전형총점	1,000점																																	
수능최저	없음																																		
성인학습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7. 3. 1. 기준 만25세 이상인 사람																																		
재직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정원외) 수능	농어촌학생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아래 I·II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tr> <td>유형 I</td> <td>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td> </tr> <tr> <td>유형 II</td> <td>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td> </tr> </table> <p>*「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 특수목적고,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유형 I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부모 거주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유형 II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충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임</p>	유형 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	유형 I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	<table border="1"> <tr> <th colspan="4">의학과(의예과)</th> </tr> <tr> <td>전형요소</td> <td>수능</td> <td>한국사 가산점</td> <td>합/불 면접</td> </tr> <tr> <td>반영비율</td> <td>100%</td> <td>-</td> <td>-</td> </tr> <tr> <td>전형총점</td> <td>1,000점</td> <td>8 ~ 10점</td> <td>-</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h colspan="3">그 외 모집단위</th> </tr> <tr> <td>전형요소</td> <td>수능</td> <td>한국사 가산점</td> </tr> <tr> <td>반영비율</td> <td>100%</td> <td>-</td> </tr> <tr> <td>전형총점</td> <td>1,000점</td> <td>8 ~ 10점</td> </tr> </table> <p>※ 수능 반영방법 13쪽 참조</p>	의학과(의예과)				전형요소	수능	한국사 가산점	합/불 면접	반영비율	100%	-	-	전형총점	1,000점	8 ~ 10점	-	그 외 모집단위			전형요소	수능	한국사 가산점	반영비율	100%	-	전형총점	1,000점	8 ~ 10점
	유형 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																																	
유형 I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																																		
의학과(의예과)																																			
전형요소	수능	한국사 가산점	합/불 면접																																
반영비율	100%	-	-																																
전형총점	1,000점	8 ~ 10점	-																																
그 외 모집단위																																			
전형요소	수능	한국사 가산점																																	
반영비율	100%	-																																	
전형총점	1,000점	8 ~ 10점																																	
기초생활 및 차상위	<p>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li> <li>「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li> <li>「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li> </ul>	<table border="1"> <tr> <td>전형요소</td> <td>수능</td> <td>한국사 가산점</td> </tr> <tr> <td>반영비율</td> <td>100%</td> <td>-</td> </tr> <tr> <td>전형총점</td> <td>1,000점</td> <td>8 ~ 10점</td> </tr> </table>	전형요소	수능	한국사 가산점	반영비율	100%	-	전형총점	1,000점	8 ~ 10점																								
전형요소	수능	한국사 가산점																																	
반영비율	100%	-																																	
전형총점	1,000점	8 ~ 10점																																	
(정원외) 학생부 교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table border="1"> <tr> <td>전형요소</td> <td>교과</td> <td>출결</td> </tr> <tr> <td>반영비율</td> <td>93.1%</td> <td>6.9%</td> </tr> <tr> <td>전형총점</td> <td>900점</td> <td>100점</td> </tr> </table>	전형요소	교과	출결	반영비율	93.1%	6.9%	전형총점	900점	100점																							
전형요소	교과	출결																																	
반영비율	93.1%	6.9%																																	
전형총점	900점	100점																																	

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전형방법												
(정원외) 학생부 종합	선취업 후진학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재직 중인 사람 <table border="1" data-bbox="459 272 1444 507"> <tr> <td>•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td> </tr> <tr> <td>•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td> </tr> <tr> <td>•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td> </tr> <tr> <td>•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td> </tr> </table>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table border="1" data-bbox="1491 312 2132 459"> <tr> <td>전형요소</td> <td>서류</td> </tr> <tr> <td>반영비율</td> <td>100%</td> </tr> <tr> <td>전형총점</td> <td>1,000점</td> </tr> <tr> <td>수능최저</td> <td>없음</td> </tr> </table>	전형요소	서류	반영비율	100%	전형총점	1,000점	수능최저	없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형요소	서류														
반영비율	100%														
전형총점	1,000점														
수능최저	없음														
만학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027. 3. 1. 기준 만30세 이상인 사람	<table border="1" data-bbox="1491 810 2132 941"> <tr> <td>전형요소</td> <td>실기</td> <td>교과</td> </tr> <tr> <td>반영비율</td> <td>52.38%</td> <td>47.62%</td> </tr> <tr> <td>전형총점</td> <td>300점</td> <td>700점</td> </tr> </table> ※ 교과 반영방법 11쪽 참조 <table border="1" data-bbox="1491 1029 2132 1117"> <tr> <td>모집단위</td> <td>실기고사종목</td> </tr> <tr> <td>체육교육과</td> <td>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배구(월패스)</td> </tr> </table>	전형요소	실기	교과	반영비율	52.38%	47.62%	전형총점	300점	700점	모집단위	실기고사종목	체육교육과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배구(월패스)
전형요소	실기		교과												
반영비율	52.38%		47.62%												
전형총점	300점	700점													
모집단위	실기고사종목														
체육교육과	제자리멀리뛰기, 10m왕복달리기, 배구(월패스)														
(정원외) 실기 /실적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아래 I·II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table border="1" data-bbox="459 770 1444 901"> <tr> <td>유형 I</td> <td>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td> </tr> <tr> <td>유형 II</td> <td>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td> </tr> </table>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 ※ 특수목적고,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유형 I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부모 거주 총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유형 II의 학생 재학기간과 학생 거주 총족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임	유형 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	유형 I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										
유형 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														
유형 II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														
기초생활 및 차상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아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table border="1" data-bbox="459 1161 1444 1265"> <tr> <t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td> </tr> <tr> <t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td> </tr> <tr> <td>•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td> </tr> </tabl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IV.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전형명	지원자격	전형방법	모집인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table border="1"> <thead> <tr> <th>모집단위</th> <th colspan="2">전형요소 및 전형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td> <td>1단계</td> <td>2단계</td> <td></td> </tr> <tr> <td>서류 100% (5배수)</td> <td>1단계 70% + 면접 30%</td> <td></td> </tr> <tr> <td>그 외 모집단위</td> <td colspan="2">면접100% ※ 40점미만 불합격</td> <td></td> </tr> </tbody> </table>	모집단위	전형요소 및 전형비율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	1단계	2단계		서류 100% (5배수)	1단계 70% + 면접 30%		그 외 모집단위	면접100% ※ 40점미만 불합격			<table border="1"> <tbody> <tr> <td>의학과(의예과)</td> <td>5</td> </tr> <tr> <td>간호학과</td> <td>2</td> </tr> <tr> <td>통합모집</td> <td>3</td> </tr> <tr> <td>계</td> <td>10</td> </tr> </tbody> </table>	의학과(의예과)	5	간호학과	2	통합모집	3	계	10
	모집단위		전형요소 및 전형비율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	1단계	2단계																							
	서류 100% (5배수)	1단계 70% + 면접 30%																							
그 외 모집단위	면접100% ※ 40점미만 불합격																								
의학과(의예과)	5																								
간호학과	2																								
통합모집	3																								
계	10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 사업, 영업																								
북한이탈주민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사람으로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전 교육과정 이수자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12년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V.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방법

### 1. 반영교과 및 반영과목

모집단위	반영교과	반영과목	반영지표	반영비율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반영교과 중 석차등급이 있는 전 과목 반영 (진로선택과목 포함)	석차등급 이수단위	전 학년 100% ※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 (졸업생 포함)
모든 모집단위 ※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 제외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한국사	반영교과 중 석차등급이 우수한 12과목 반영 (진로선택과목 최대 2개 포함)		

\*진로선택과목이 성취도로 나오는 경우 A=1등급, B=2등급, C=4등급으로 변환하여 반영

### 2. 모집단위별 교과성적 산출방법

#### 가. 교과성적 산출식

모집단위(전형)	교과총점	기본점수	산출식	평균석차등급 산출식
모든 모집단위 ※아래 일부 모집단위(전형) 제외	900	630	$630 + \frac{9 - \text{평균석차등급}}{8} \times 270$	$\frac{\sum \text{반영교과등급} \times \text{이수단위}}{\sum \text{반영교과 이수단위}}$
체육교육과	700	490	$490 + \frac{9 - \text{평균석차등급}}{8} \times 210$	
스포츠레저학전공, 스포츠재활의학전공 (실기전형)	600	420	$420 + \frac{9 - \text{평균석차등급}}{8} \times 180$	
스포츠지도학전공(체육특기자전형)	180	126	$126 + \frac{9 - \text{평균석차등급}}{8} \times 54$	

※ 출결 반영방법

미인정 결석일수		0~3일	4~5일	6~10일	11~15일	16~20일	21~25일	26일 이상
전형별 반영점수	학생부교과	100점	97점	94점	91점	88점	85점	80점(기본점수)
	체육특기자전형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기본점수)

나. 교과성적 처리 예외 기준

1) 과목 석차가 표기된 경우(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text{과목 석차백분율} = \frac{\text{석차} + \{(\text{동석차 학생수}-1)/2\}}{\text{이수자 수}} \times 100$	<b>석차등급</b>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b>석차백분율</b>	4%이하	4%초과 11%이하	11%초과 23%이하	23%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77%이하	77%초과 89%이하	89%초과 96%이하	96%초과

2)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 평균점수를 반영하며, 90점 이상은 90점을 반영하여 산출

모집단위(전형)	교과총점	검정고시 기본점수	산출식
모든 모집단위 ※아래 일부 모집단위(전형) 제외	925	250	250+(검정고시 합격 평균점수×7.5)
체육교육과	647.5	175	175+(검정고시 합격 평균점수×5.25)
스포츠레저학전공, 스포츠재활의학전공 (실기전형)	555	150	150+(검정고시 합격 평균점수×4.5)
스포츠지도학전공(체육특기자전형)	185	50	50+(검정고시 합격 평균점수×1.5)

3) 평어만 표기된 경우

평어	-	-	수	-	우	-	미	양	가
<b>석차등급</b>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4) 국외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및 기타 학생부가 없는 경우, 교과성적과 출결 점수는 기본점수 반영

## VI. 수능성적 반영방법

### 1.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모집단위	반영영역(%)						반영방법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사회	과학	직탐		
의학과(의예과)	필수 (20%)	필수(30%)	필수(20%)	필수(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 영역 필수 반영 (국어, 수학, 탐구는 백분위, 영어는 등급별 반영점수)</li> <li>탐구영역은 2과목(사회·과학) 평균을 반영</li> <li>가중치 (① or ②)</li> <li>① 과학탐구 2개 과목 선택 시, 2개 과목 평균 백분위의 5%</li> <li>② 과학탐구 선택 2개 과목 중, 화학Ⅱ 또는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경우, 2개 과목 평균 백분위의 7%</li> </ul>
간호학과	필수 (20%)	필수(30%)	필수(30%)	필수 (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개 영역 필수 반영 (국어, 수학, 탐구는 백분위, 영어는 등급별 반영점수)</li> <li>탐구영역은 2과목(사회·과학) 평균을 반영</li> <li>가중치: 과학탐구 2개 과목 선택 시, 2개 과목 평균 백분위의 5%</li> </ul>
헬스케어융합대학 사범대학	상위 3개 영역 (1순위 40%, 2순위 30%, 3순위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 3개 영역 반영 (국어, 수학, 탐구는 백분위, 영어는 등급별 반영점수)</li> <li>탐구영역은 2과목(사회·과학) 평균을 반영</li> </ul>
트리니티융합대학	상위 2개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 2개 영역(각 50%) 필수 반영 (국어, 수학, 탐구는 백분위, 영어는 등급별 반영점수)</li> <li>탐구영역은 2과목(사회·과학·직업탐구) 평균을 반영</li> </ul>

## 2. 수능성적 산출방법

모집단위	산출방법	반영점수	한국사 가산점**
모든 모집단위 ※일부 모집단위 제외	$\Sigma[\text{반영영역 백분위(영어는 등급별 반영점수)} \times \text{반영비율}] \times 10$	1,000점	8~10점
체육교육과	$\Sigma[\text{반영영역 백분위(영어는 등급별 반영점수)} \times \text{반영비율}] \times 7$	700점	
스포츠레저학전공, 스포츠재활의학전공	$\Sigma[\text{반영영역 백분위(영어는 등급별 반영점수)} \times \text{반영비율}] \times 6$	600점	

## ※ 출결 반영방법

미인정 결석일수		0~3일	4~5일	6~10일	11~15일	16~20일	21~25일	26일 이상
전형별 반영점수	학생부교과(운동선수출신(B)전형)	100점	97점	94점	91점	88점	85점	80점

## ※ 영어 등급별 반영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	100점	98점	95점	92점	89점	86점	83점	80점	78점

## ※ 한국사 가산점 반영방법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점수	10점				9점			8점	

##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의학과(의예과), 간호학과에만 해당

모집단위	전형구분		수능최저학력기준	
			기준	반영과목
의학과(의예과)	학생부교과	일반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5이내	국어, 영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과학탐구(2과목)
		지역기회균형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7이내	
		그 외 전형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내	
	학생부종합		상위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내	
간호학과	모든 전형 ※ 학생부교과(지역기회균형) 제외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9이내	국어, 영어, 수학(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탐구(사회 또는 과학)
	학생부교과	지역기회균형전형	상위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이내	

※ 탐구영역 2개 과목 평균 등급 반영(소수점 이하 버림)

※ 간호학과는 탐구(사회·과학)는 사회 2과목, 과학 2과목, 사회와 과학 1과목씩도 인정

## Ⅶ.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

-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함
  - 1) 반영방법: 전형총점(1,000점) - 감점기준
  - 2)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3) 다만, 검정고시, 국외고 출신자 등 중에서 국내 고등학교 재학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적용
  - 4) 2개 이상의 사항이 중첩되어 적용된 경우, 감점이 가장 큰 1개의 조치사항만 반영

학교폭력 조치사항 유형*		반영방법		
		모든 모집단위 (의과대학, 사범대학 제외)	의과대학	사범대학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감점없음	감점 50점	감점 50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감점 80점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감점 100점
4호	사회봉사	감점 50점	감점 80점	부적격 처리 (사정제외)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감점 100점	감점 100점	
7호	학급 교체	감점 150점	감점 150점	
8호	전학	감점 200점	감점 200점	
9호	퇴학처분	부적격 처리 (사정제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